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44 발의연월일: 2022. 1. 17.

발 의 자:배현진·강기윤·김예지

유경준 • 유의동 • 조명희

조태용・지성호・홍준표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(Rotavirus)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.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국내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로 하여금 접종을 권고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생함.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감염 중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4,221명 중 21,728(7.9%)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.

이에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1 7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	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
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	
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	
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	
수예방접종(이하 "필수예방접	
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	
한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7.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</u>
	<u>염증</u>
<u>17</u> . (생 략)	<u>18</u> . (현행 제17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